

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

의안 번호	53
----------	----

제출년월일 : 1999. 10. 11

제 출 자 : 사하구청장

1. 제안이유

지방재정법제77조, 동법시행령제84조 및 사하구공유재산관리조례제37조의 규정에 의거 2000년도 공유재산으로 취득하여야 할 중요재산에 대하여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우리구 의회의 의결을 받아 목적사업을 차질없이 집행하고자 함

2. 주요골자

사업명	취득 구분	소재지	계			토 지			건 물			
			구분	필지 (동수)	면적 (㎡)	추정 금액 (천원)	필지	면적 (㎡)	추정 금액 (천원)	동수	면적 (㎡)	추정 금액 (천원)
경로당부지 및 건물신축	신규	하단동 608-29	토지	1	120.2	219,526	1	120.2	98,724	1	144.24	120,802
			건물	1	144.24							

※ 토지는 공시지가, 건물은 신축예정공사비 기준임

3. 관계법령

- 지방재정법제77조, 동법시행령제84조
- 사하구공유재산관리조례제37조

공유재산관리계획

'2000년도 관리계획 총괄표(7-1)

회계명 : 일반회계

구 분		합 계			상 반 기			하 반 기			비고		
		필지 (동수)	면적 (㎡)	추정금액 (천원)	필지 (동수)	면적 (㎡)	추정금액 (천원)	필지 (동수)	면적 (㎡)	추정금액 (천원)			
취 득	계	토지	1	120.2	98,724	1	120.2	98,724	-	-	-		
		건물	1	144.24	120,802	1	144.24	120,802	-	-	-		
		기타	-	-	-	-	-	-	-	-	-	-	
	1.매입	토지	1	120.2	98,724	1	120.2	98,724	-	-	-		
		건물	1	144.24	120,802	1	144.24	120,802	-	-	-		
		기타	-	-	-	-	-	-	-	-	-	-	
	2.교환 으로 취득	토지											
		건물											
		기타											
3.기타 취득	토지												
	건물												
	기타												
처 분	계	토지											
		건물											
		기타											
	4.매각	토지											
건물													
기타													
5.양여	토지												
	건물												
	기타												
6.교환 으로 처분	토지												
	건물												
	기타												
사용허가 및 대부	계												
	토지												
	건물 기타												

2000년도 취득대상 재산목록(7-2)

재 산 의 표 시			추정금액 (천원)	취득시기	취득사유	현소유자	취득재산 소유자 주소·성명	비 고
소재지	지목(구조)	면적 (㎡)						
	소 계	264.44	219,526					
하단동 608-29	대	120.2	98,724	2000. 1/4분기	경로당부지 매입	재정경제부	사 하 구	일반회계
위 지상	철근콘크리트 스투브	144.24	120,802	2000. 2/4분기	경로당건물 신축	-	"	"

※ 토지는 공시지가, 건물은 신축예정공사비 기준임

경로당 부지 및 건물취득

1. 취득이유

○ 현재 선창노인정과 당산노인정의 건물은 무허가건물 및 사유지상에 위치한 영세규모의 노후건물로 이용 노인들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므로

○ 이용 노인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노인복지 증진을 도모하고자 2000년도에 아래 부지를 매입하여 현대식 건물로 신축하고자함.

2. 취득대상 재산내역

사업명	소재지	구분	지목 (구조)	면적(m ²)	추정금액 (천원)	취득시기	취득자	주관부서
경로당 부지 및 건물취득	하단동 608-29	토지	대	120.2 (36.4평)	98,724	'2000년 1/4분기	사하구	사회복지과
		건물	철근콘크리트 스라브	144.24 (43.6평)	120,802	'2000년 2/4분기	"	

3. 사업개요

- 위치 : 하단동 608-29번지
- 용도지역 : 일반주거지역
- 규모
 - 토지 : 120.2m²
 - 건물 : 철근콘크리트 스라브 지상2층 연면적 144.24m²
- 사용용도
 - 경로당 부지 및 건물
 - 사업비 : 219,526천원

4. 관계법령

- 지방재정법 제77조, 동법시행령제84조
- 사하구공유재산관리조례제37조

5. 위치 및 지적도 : 별첨

위치도 및 지적도

사하구 하단동 608-29번지 대 120.2㎡
 위 지 상 철·콘·스 144.24㎡

